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1일, 신성범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국회(임사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4. 8. 27) 상정, 심사, 의결
(대안반영 폐기)

제418회국회(정사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9. 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신성범 의원)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1) 게임장 출입자 등 대상 증표 제시 요구 등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두 개정안은 모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장 출입자 등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근거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문 위치 및 일부 문구 등에 있어서만 다소 차이가 있음.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신성범의원안	김윤덕의원안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후단 신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 ----- ----. 이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호, 제5호의2 및 제7호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현행	신성범의원안	김윤덕의원안
1. ~ 8. (생략) <신설>	② <u>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제5호·제5호의2의 사항 및 같은 항제7호 중 청소년의 출입시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u>	<u>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장 출입 또는 게임물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u> 1. ~ 8. (현행과 같음)

※ 신성범의원안 중 제36조, 제38조, 제39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6조 및 제48조 등, 안 제28조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번호의 단순 개정사항은 지면상 대비표에서 제외

나. 검토의견

게임제공업¹⁾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경우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²⁾ 중 청소년 출입이 불가한 경우³⁾에 대하여 현행법 제28조⁴⁾제5호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준수사항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7호는 게임제공업 중 청소년게임제공업의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 3)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르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않은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됨.
-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 5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경우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등을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시간⁵⁾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3. 3. 21. 법률 개정 시 신설되어 2024. 3. 22.부터 시행된 같은 조 제5호의2에 따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⁶⁾의 경우 이용자가 제21조제2항⁷⁾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게임장 출입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여 나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다만, 현재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종사자의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요구 규정⁸⁾과 정의 규정⁹⁾의 청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 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8)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

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 개념을 연결하여 해석을 통해 적용하고 있으나,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이해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법상 사정에 맞게 증표 제시나 관련 사항이 적용되도록 「청소년 보호법」에 모두 규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개정안은 게임물 등급구분 준수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나이 확

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9)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일반게임제공업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업소 및 법 제2조제5호가목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인이 가능한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청소년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증표 제시 요구 등의 근거를 이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업주 및 종사자 등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에 따라 근거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28조제7호10)의 준수사항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영업시간’도 포함되어 있는바, 증표의 제시 등은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신성범의 원안과 같이 문구를 일부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둘째, 김윤덕의원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이를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나, 증표 제시와 관련한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항의 입법례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재량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증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성인임이 자명한 경우와 같이 반드시 입장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일반게임제공업자·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게임제공업자: 오전 9시~오후 12시

을 제한하지는 않아도 되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성범의원안과 같이 이를 재량적 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셋째, 김윤덕의원안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을 제28조 후단으로 신설하려는 것이나, 위 제28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를 전·후단으로 함께 규정하기보다는 법률 이해의 용이성 측면에서 신성범의원안과 같이 별도의 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넷째,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제4항의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주민등록증’¹¹⁾이 포함되도록 개정되어 2024. 12. 27.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¹²⁾ 이에 맞추어 신성범의원안과 같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부분의 시행일도 2024. 12. 27.로 맞출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증표 제시 요구 등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 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25년부터 정식 시행 예정임.

12) 법률 제19841호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시행 2024..12.27.>

법률안」(의안번호 제2200292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288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285호)과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64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668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644호)이 우리 위원회에 함께 회부되어 있음.

2)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 시 행정처분 면제

가. 개정안의 요지

두 개정안은 모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그 나이를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신성범의원안	김윤덕의원안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생 략)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②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35조제2항제5호¹³⁾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제28조¹⁴⁾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음. 그에 따라 청소년을 출입시킨 일반게임제공업자·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출입불가인 경우) 및 친권자 등을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출입시킨 청소년게임제공업자·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출입가능인 경우) 등은 고의·과실 여부 등을 불문하고¹⁵⁾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5.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제1항제4호: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5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그러나 최근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고 주류 등을 주문한 뒤 오히려 업주에게 영업정지 사항임을 주장하며 협박한 사례¹⁶⁾ 등이 발생하면서, 청소년이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악용하여 고의로 법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더라도 오히려 업주에게만 행정처분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신분증 도용 등을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이용한 경우에도 업주에게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제기¹⁷⁾ 등에 따라,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그 나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¹⁸⁾이 2023. 3. 21. 법률 개정 시 신설되어 2024. 3. 22.부터 시행되고 있음.¹⁹⁾

15) 다만,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일부 감경하는 것은 가능함.

16) 서울경제, “나이 속인채 술 마신 10대들 ‘영업정지 안당하려면 돈 내놔라’...너클 끼고 가게 사장 협박”, 2023.12.27., 연합뉴스TV, 나이 속이고 노래방서 먹튀...“경찰, 외려 피해자에 ‘뭘 잘했냐’”, 2024.2.2. 등 기사 참조

17) 뉴스1, ““미성년자, 성인게임 이용시 PC방 점주만 과도한 책임”... 개정 절실”, 2018.9.5. 등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하고, 제5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28조제5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9) 2022. 8. 2.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37호), 2023. 1. 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대안반영폐기), 2023. 2. 27. 본회의 의결

다만, 이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만 한정되는 사항인바, 그 이후로도 다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면책 규정이 도입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서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같은 행정처분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등이 위와 같은 적극적 방법으로 업주 및 종사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까지 업주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또한, 「식품위생법」,²⁰⁾ 「청소년 보호법」,²¹⁾ 「담배사업법」²²⁾ 등에서도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및 폭행·협박과 같이 업주에게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

20)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21) 「청소년 보호법」 제54조(과징금)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59조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있음.

참고로,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200288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285호)과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668호), 「공연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200644호)이 우리 위원회에 함께 회부되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박정하 위원장)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